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12741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127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245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남대원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한

변론 종결2020. 10. 8.

판결 선고2020. 11. 5.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24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6,000만 원 및 그 중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력이 충분한 자로부터 언제든지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선이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금력이 있는 자로부터 언제든지 잔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먼저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그와 같은 요청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선이행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